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1984. 11. 6

4차 개정 2008. 05. 27. 규칙 제1197호

5차 개정 2013. 03. 21. 규칙 제1307호

6차 개정 2013. 07. 26. 규칙 제1312호

7차 개정 2020. 05. 11. 규칙 제1513호

8차 개정 2020. 12. 09. 규칙 제1574호

타규정개정 2023. 4. 4. 규칙 제1632호

10차 개정 2026. 2. 26. 규칙 제1684호

11차 개정 2026. 6. 9. 규칙 제168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정원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중요 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중장기 대학발전계획 중 중요사항
6. 기타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6.> <개정 2026.6.9.>

② 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교육혁신본부장, 산학협력단장, 부설초등학교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7.26> <개정 2019.4.5.> <개정 2020.5.11.> <개정 2020.12.9.> <개정 2023.4.4.> <개정 2026.2.26.> <개정 2026.6.9.>

③ 총장은 당연직 위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교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조(대학발전기획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 대학발전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발전기획위원회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교육혁신본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1.> <개정 2020.12.9.> <개정 2026.2.26.> <개정 2026.6.9.>

③ 대학발전기획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의2(대학운영실행위원회) ① 대학은 제2조 각 호의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 및 실행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실행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5.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운영실행위원회는 대학운영위원회 위원, 과학영재교육원장, 각 부서 소관 센터 전담교수 및 각 부서 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1.>
<개정 2026.2.26.>

③ 대학운영실행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개정 2020.5.11.>

제5조(회의) ① 총장은 위원회, 대학운영실행위원회와 대학발전기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20.5.11.>

② 총장이 제1항의 회의를 소집·주관하기 어려운 때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개정 2020.5.11.>

③ 위원회, 대학운영실행위원회와 대학발전기획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 다. <개정 2020.5.11.>

제6조(간사) ① 위원회, 대학운영실행위원회와 대학발전기획위원회의 회의 안전에 따라 관련 업무의 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0.5.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대학운영실행위원회와 대학발전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0.5.11.>

제7조(회의 개최)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대학운영실행위원회 회의 분기 1회, 대학발전기획위원회 회의는 주 1회, 다만, 안전에 따라 회의 횟수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제8조(연구과제 수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임) 위원회, 대학운영실행위원회와 대학발전기획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5.11.>

부 칙(2008. 4. 23. 규칙 제119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면개정)

부 칙(2008. 5. 27. 규칙 제119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1. 규칙 제130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26. 규칙 제131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11. 규칙 제1513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9. 규칙 제1574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4. 규칙 제16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우리대학 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교육정보원” 을 “정보전산원” 으로 한다.
2. “교육정보원장” 을 “정보전산원장” 으로 한다.

부 칙(2026. 2. 26. 규칙 제1684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6. 9. 규칙 제1688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